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942호 2025. 9. 16.(화)

차 례

고 시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83호 뷰티풀파크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5-183호

뷰티폴파크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뷰티폴파크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 9. 1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요 변경 내용

-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금회 사업에 한함)
 - 서구 오류동 1611-4, 1644-5, 1636-2번지 일원에 산업단지 내 사고유출수 발생시 사고유출수를 저류하는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인천광역시장)
- 지구단위계획 변경
 - 유수지 내 완충저류시설 및 중계펌프장의 공간적 범위 결정(비도시계획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의제
 - 사 업 명: 인천광역시 뷰티폴파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11-4, 1644-5, 1636-2번지 일원
 - 시 행 자: 인천광역시장
 - 규 모: 완충저류시설, 중계펌프장, 자연유하 및 압송관로, 차집관로 등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뷰티폴파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변경, 금회 사업에 한함)

가. 전 체

- 성 명 : 인천도시공사 사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나. 금 회

- 성 명 : 인천광역시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 없음)

가. 사업의 목적 (변경 없음)

- 점단신도시 및 인천 지역 내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공장의 부지 확보
-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는 공장지대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개발
- 수도권 서부지역내 중소기업을 위한 대규모의 新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균형 발전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인천 서북부 지역의 균형개발 도모

나. 사업개요 (변경 없음)

- 근거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사 업 비: 14,038억원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합	계	2,250,719.2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1,381,455.0	61.3	
	일 반 공 장 용 지	1,328,186.8	59.0	
	임 대 공 장 용 지	17,205.6	0.7	
	지 식 산 업 센 터 용 지	26,441.9	1.2	
	재 활 용 시 설 용 지	9,620.7	0.4	
	지 원 시 설 용 지	57,033.4	2.5	
	지 원 시 설 용 지	52,573.4	2.3	
	주 유 소 용 지	2,441.5	0.1	
	공 공 문 화 · 복 지 시 설	2,018.5	0.1	
	주 거 용 지	5,693.6	0.3	22세대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공 공 시 설 용 지	806,537.2	35.9	
공 원 · 녹 지	226,270.8	10.1	
공 원	66,852.2	3.0	3개소
녹 지	138,754.4	6.2	11개소
저 류 시 설	20,664.2	0.9	4개소
기 타 시 설 용 지	580,266.4	25.8	
폐 기 물 처 리 시 설	38,680.9	1.7	1개소
폐 수 종 말 처 리 시 설	40,088.4	1.8	1개소
빗 물 펌 프 장	4,139.6	0.2	1개소
변 전 소	3,993.1	0.2	1개소
주 차 장	23,587.5	1.0	7개소
공 영 차 고 지	9,998.7	0.4	1개소
도 로	459,778.2	20.5	

주) 1. 공원은 공원내 시설로 중복 지정된 저류시설 1개소(A = 20,613.0㎡) 포함면적임

○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 주요유치업종
- 유치업종 배치계획

중분류	업 종 명	면적(㎡)	구성비(%)	비고
-	합 계	1,371,834.3	100.0	
16 3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132,655.5	9.7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8,047.9	5.0	
24	1차 금속 제조업	48,312.4	3.5	
25 2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¹⁾	23,146.9	1.7	
26 27 2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공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130,891.8	9.5	
29 2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²⁾	599,320.3	43.7	
10	식료품 제조업 ³⁾	29,476.3	2.1	
-	임대공장용지 ⁴⁾	17,205.6	1.3	
-	복합업종 ⁵⁾	296,335.7	21.6	
-	지식산업센터 ⁶⁾	26,441.9	1.9	

- 주)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에 청정표면처리센터 (23,146.9㎡) 포함
 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중 (25922)도금업 제외
 3. 식료품제조업 중 (1012)육류가공·저장처리업, (1021)수산식품 가공·저장처리업, (1071)떡·빵·과자류 제조업, (1073)면류, 마카로니·유사식품제조업, (1079)기타 식료품제조업' 에 한함
 4. 제시된 9개 업종에 한해 입주할 희망하는 사업체에 임대
 5.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991)아스콘 제조업, (23322)레미콘 제조업 제외),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3)기타 제품 제조업
 6. 제시된 9개 업종과 (10)식품 제조업, (11)음료 제조업, (13)섬유제품제조업, (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33)기타 제품 제조업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금회 사업에 한함)

가. 전 체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243번지 일원
- 면 적 : 2,250,719.2㎡

나. 금 회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11-4, 1644-5, 1636-2번지 일원
- 면 적 : 1,780.7㎡

5.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 금회 사업에 한함)

가. 전 체

- 시행방법 : 수용방식
- 시행기간 : 2006년 ~ 2014년 3월 31일 (준공)

나. 금 회

- 시행방법 : 직접시행
- 시행기간 : 실시계획(변경) 고시일 ~ 2028년 2월 29일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각호의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결정 (변경 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 없음)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	뷰티풀파크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243번지 일원	2,250,719.2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대한 결정 (변경)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 없음)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총 계	2,250,719.2	100.0	
주거지역	20,991.3	0.9	
제1종일반주거지역	20,991.3	0.9	
공업지역	2,229,727.9	99.1	
일반공업지역	2,126,418.1	94.5	
준공업지역	103,309.8	4.6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변경 없음)

▣ 도로시설 총괄표 (변경 없음)

(단위 : 개, m, m²)

구 분		폭원(m)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m ²)	비고
합 계			65	22,581	459,778.2	
일 반 도 로	광로	소계	-	1	1,590	63,600.0
		1류	-	-	-	-
		2류	-	-	-	-
		3류	40	1	1,590	63,600.0
	대로	소계	-	6	5,145	128,625.0
		1류	-	-	-	-
		2류	-	-	-	-
		3류	25	6	5,145	128,625.0
	중로	소계	-	48	14,848	241,309.0
		1류	20~22	9	3,448	74,772.0
		2류	15	30	9,637	144,855.0
		3류	12	9	1,763	21,682.0
	소로	소계	-	10	998	8,531.0
		1류	10	4	507	5,051.0
		2류	8	1	201	1,608.0
		3류	6	1	14	84.0
특수도로	3류	6~8	4	276	1,788.0	보행자도로
기 타					17,713.2	가감속차로 등

▣ 도로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광로	3	23	40~52	주간선 도로	7,167 (1,590)	동측행정구역계 (원당동 8-2답)	중로2-495호선 (마전동 499-3도)	일반도로		인고 제118호 '98.6.12.	
기정	대로	3	58	25~30	주간선 도로	8,510 (969)	동측지구계 (마전동 290-17)	광로3-23호선 (블로동 326-4)	일반도로		인고 제118호 '98.6.12.	
기정	대로	3	114	25	보조간선 도로	2,762 (542)	지구계 (오류동1610-10)	서측행정 구역계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대로	3	115	25	보조간선 도로	1,320	광로 3-23	대로 3-114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대로	3	116	25	보조간선 도로	498	광로3-23	대로3-58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대로	3	117	25	보조간선 도로	1,319	광로 3-23	대로 3-114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대로	3	118	25	보조간선 도로	497	광로 3-23	대로 3-58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1	140	20	집산도로	675 (298)	광로 3-23	대로 3-59 (오류동1695)	일반도로		인고 제182호 '00.10.14.	
기정	중로	1	362	22	집산도로	369	대로 3-117	대로 3-115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1	363	22	집산도로	1,477	대로 3-117	지구계 (대로 3-64)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1	364	20	집산도로	244	광로 3-23	중로 1-363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1	365	22	집산도로	371	대로 3-117	대로 3-115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1	366	22	집산도로	117	대로 3-115	지구계 (오류동1623-9)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1	367	22	집산도로	117	대로 3-115	지구계 (오류동1623-9)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1	368	22	집산도로	291	광로 3-23	중로 1-363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1	369	22	집산도로	164	중로 1-363	중로 2-655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2	655	15	집산도로	993	중로 1-363	지구계 (오류동1636-2)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2	656	15	집산도로	155	중로 1-363	중로 2-655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2	657	15	집산도로	292	중로 1-363	중로 1-368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2	658	15	집산도로	266	중로 1-363	중로 2-661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2	659	15	집산도로	376	중로 1-363	중로 2-661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2	661	15	집산도로	468	중로 1-368	중로 1-364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2	662	15~ 21	집산도로	222	광로 3-23	중로 1-140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2	663	15	집산도로	490	대로 3-58	중로 1-140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2	664	15	집산도로	329	대로 3-118	중로 2-663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2	665	15	집산도로	397	대로 3-118	중로 2-663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2	666	15	집산도로	315	대로 3-117	중로 1-364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2	667	15	집산도로	243	대로 3-118	중로 2-735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2	668	15	집산도로	367	대로 3-118	대로 3-116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2	669	15	집산도로	369	대로 3-117	대로 3-115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2	670	15	집산도로	370	대로 3-117	대로 3-115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2	671	15	집산도로	284	대로 3-117	중로 2-672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2	672	15	집산도로	372	대로 3-117	대로 3-115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2	673	15	집산도로	373	대로 3-117	대로 3-115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2	674	15	집산도로	106	대로 3-58	유수지㉔ (오류동1644-5)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2	675	15	집산도로	452	중로 1-369	중로 2-655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2	735	15	집산도로	395	대로 3-58	중로 2-668	일반도로		인고 제35호 '10.2.8.	
기정	중로	2	736	15	집산도로	322	대로 3-58	대로 3-58	일반도로		인고 제35호 '10.2.8.	
기정	중로	2	737	15	집산도로	201	대로 3-58	중로 2-664	일반도로		인고 제35호 '10.2.8.	
기정	중로	3	249	12	집산도로	383	중로 2-665	중로 2-665	일반도로		인고 제35호 '10.2.8.	
기정	중로	3	250	12	집산도로	158	중로 1-363	중로 2-659	일반도로		인고 제35호 '10.2.8.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3	251	12	집산도로	158	중로 1-363	중로 2-659	일반도로		인고 제35호 10.2.8.	
기정	중로	3	392	12	국지도로	40	중로 2-662	중로 3-393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3	393	12	국지도로	376	중로 1-140	지구계 (오류동 1665-2)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3	394	12~ 16	국지도로	40	중로 1-140	지구계 (오류동 395-93)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중로	3	336	12	국지도로	118	대로 3-114	폐기물처리시설	일반도로		인고 제33호 13.2.28.	
기정	중로	3	337	12~ 15	국지도로	226	중로 2-666	중로 2-666	일반도로		인고 제33호 13.2.28.	
기정	중로	3	338	12	국지도로	264	중로 1-363	중로 2-656	일반도로		인고 제33호 13.2.28.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79	중로 2-663	소로 1-2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237	중로 3-394	소로 1-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60	소로 1-2	소로 1-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201	소로 1-1	지구계 (오류동369-5)	일반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소로	1	가	10	국지도로	31	중로 1-140	중로 3-394	일반도로		인고 제33호 13.2.28.	
기정	소로	3	가	6	국지도로	14	지구계 (오류동1143)	지구계 (오류동1143)	일반도로		인고 제33호 13.2.28.	
기정	소로	3	1	6	특수도로	29	중로 1-140	소로 1-2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소로	3	2	6	특수도로	78	중로 1-363	중로 2-675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소로	3	3	6	특수도로	80	중로 2-655	중로 2-675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 제366호 08.12.29.	
기정	소로	3	나	6 ~8	특수도로	89	광로 3-23	중로 2-666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 제33호 13.2.28.	

▣ 주차장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주차장	서구 오류동 1640-1	3,765.3	인고 제366호 08.12.29.	준공업지역
기정	㉡	주차장	서구 오류동 1658-9	3,883.5	인고 제366호 08.12.29.	준공업지역
기정	㉢	주차장	서구 오류동 1639-12	1,650.2	인고 제366호 08.12.29.	일반공업지역
기정	㉣	주차장	서구 오류동 1639-12	1,650.2	서구고시 제63호 17.6.5.	일반공업지역
기정	㉤	주차장	서구 오류동 1663-1	3,023.8	인고 제366호 08.12.29.	일반공업지역
기정	㉥	주차장	서구 오류동 1515-5	2,097.4	인고 제366호 08.12.29.	준공업지역
기정	㉦	주차장	서구 오류동 1644-9	2,694.2	인고 제366호 08.12.29.	일반공업지역
기정	㉧	주차장	서구 오류동 1630-9	4,822.9	인고 제366호 08.12.29.	일반공업지역

▣ 자동차정류장 결정조서 (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㉑	자동차 정류장	공영 차고지	서구 오류동 1620-1 일원	9,998.7	-	9,998.7	인고 제366호 '08.12.29.	일반공업 지역

나) 공간시설 (변경)

▣ 녹지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㉑	㉑호 녹지	완충녹지	서구 오류동 1644-11	11,675.7	인고 제366호 '08.12.29.	일반공업지역
기정	㉒	㉒호 녹지	완충녹지	서구 오류동 1655-8	18,573.1	인고 제366호 '08.12.29.	일반공업지역
기정	㉓	㉓호 녹지	완충녹지	서구 오류동 1659-14 일원	5,634.6	인고 제366호 '08.12.29.	제1종일반 주거지역
기정	㉔	㉔호 녹지	완충녹지	서구 오류동 1664	4,393.9	인고 제366호 '08.12.29.	일반공업지역
기정	㉕	㉕호 녹지	완충녹지	서구 오류동 1636-3	2,858.6	인고 제366호 '08.12.29.	일반공업지역
기정	㉖	㉖호 녹지	완충녹지	서구 오류동 1666 일원	52,095.9	인고 제366호 '08.12.29.	일반공업지역
기정	㉗	㉗호 녹지	완충녹지	서구 오류동 1610-8 일원	16,959.2	인고 제366호 '08.12.29.	일반공업지역
기정	㉘	㉘호 녹지	완충녹지	서구 오류동 1663-9 일원	2,061.1	인고 제147호 '11.6.20.	일반공업지역
기정	㉙	㉙호 녹지	완충녹지	서구 오류동 1644-10 일원	4,738.5	인고 제366호 '08.12.29.	일반공업지역
기정	㉚	당하1녹지	완충녹지	서구 오류동 1663-7 일원	25,800.5 (7,132.5)	서구고시 제22호 '05.4.12.	일반공업지역
기정	㉛	당하2녹지	완충녹지	서구 오류동 1639-13 일원	48,741.3 (12,631.3)	서구고시 제22호 '05.4.12.	일반공업지역

※ ()는 산업단지내 위치 및 면적

▣ 공원 결정 조서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호공원	근린공원	서구 오류동 1656-4	10,970.2	인고 제366호 '08.12.29.	일반공업지역
기정	㉡	㉡호공원	근린공원	서구 오류동 1665-2	10,869.3	인고 제366호 '08.12.29.	일반공업지역
기정	㉢	㉢호공원	근린공원	서구 오류동 1613-1 일원	45,012.7	인고 제366호 '08.12.29.	일반공업지역
변경	㉢	㉢호공원	근린공원	서구 오류동 1613-1 일원	45,012.7	인고 제366호 '08.12.29.	일반공업지역 (유수지㉢와 중복결정)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호공원	· 중복결정 내용 표시 : 비고 내 일반공업지역 → 일반공업지역(유수지㉢와 중복결정)	· 유수지㉢와 중복결정 된 사항이 미표기 되어있어 표기

다)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 없음)

▣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변전소	서구 오류동 1636-1	3,993.1	인고 제366호 '08.12.29.	일반공업지역

라) 방재시설 (변경 없음)

▣ 유수지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유수지	저류시설	서구 오류동 1644-5	13,269.4	인고 제366호 '08.12.29.	일반공업지역
기정	㉠	유수지	저류시설	서구 오류동 1636-2	7,280.1	인고 제366호 '08.12.29.	일반공업지역
기정	㉡	유수지	저류시설	서구 오류동 1611-4	20,613.0	인고 제366호 '08.12.29.	일반공업지역 (공원㉡와 중복결정)
기정	㉢	유수지	저류시설	서구 오류동 1611-20	114.7	-	일반공업지역

☑ 방수설비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방수설비 (빗물펌프장)	서구 오류동 1665-1	4,139.6	인고 제147호 11.6.20.	일반공업지역

마) 환경기초시설 (변경 없음)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폐기물 처리시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서구 오류동 1610-3	38,680.9	인고 제366호 08.12.29.	일반공업지역

☑ 수질오염방시설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수질오염 방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서구 오류동 1610-4	40,088.4	인고 제366호 08.12.29.	일반공업지역

3) 도시기반시설(공간적 범위) 결정(신설) 조서

가) 공간적 범위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공간적범위			최초 결정일	비 고
				구분	기정	변경		
신설	㉠		서구 오류동 1644-5	면적(㎡)	-	217.2	217.2	· 도시계획시설 : 유수지
				높이(층)	-	지하2층~ 지상1층	지하2층~ 지상1층	
신설	㉡	유수지	서구 오류동 1636-2	면적(㎡)	-	241.8	241.8	· 도시계획시설 : 유수지
				높이(층)	-	지하2층~ 지상1층	지하2층~ 지상1층	
신설	㉢		서구 오류동 1611-4	면적(㎡)	-	1,321.7	1,321.7	· 도시계획시설 : 유수지 공원 중복결정
				높이(층)	-	지하2층~ 지상1층	지하2층~ 지상1층	
신설	㉣	근린공원	서구 오류동 1613-1 일원	면적(㎡)	-	1,321.7	1,321.7	· 도시계획시설 : 유수지 공원 중복결정
				높이(층)	-	지하2층~ 지상1층	지하2층~ 지상1층	

나) 공간적 범위 결정(신설) 사유서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유수지 ----- 근린공원	· 공간적 범위 비도시계획시설 결정	·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근린공원) 부지를 활용한 비도시계획시설(완충저류시설 1개소, 중계펌프장 2개소) 설치로 산업단지 내 사고시 사고유출수를 저류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부지 확보를 위한 공간적 범위 결정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결정 (변경 없음)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 공장용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적(㎡)	위치	면적(㎡)	
공장용지 (I)	I 1	13,044.7	-	-	○ 최소획지 : 1,650㎡
	I 2	63,725.0	-	-	
	I 3	40,506.1	-	-	
	I 4	37,562.9	-	-	
	I 5	7,950.8	-	-	
	I 6	17,421.4	-	-	
	I 7	21,347.6	-	-	
	I 8	69,255.4	-	-	
	I 9	47,416.5	-	-	
	I 10	69,649.6	-	-	
	I 11	36,203.9	-	-	
	I 12	73,111.5	-	-	
	I 13	28,939.4	-	-	
	I 14	28,528.8	-	-	
	I 15	43,343.3	-	-	
	I 16	40,820.7	-	-	
	I 17	43,038.1	-	-	
	I 18	8,275.6	-	-	
	I 19	20,770.7	-	-	
	I 20	46,854.2	-	-	
	I 21	26,441.9	-	-	○ 지식산업센터용지

도면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적(m ²)	위치	면적(m ²)	
공장용지 (I)	I 22	58,701.6	-	-	○ 최소획지 : 1,650m ²
	I 23	19,230.1	-	-	
	I 24	13,653.4	-	-	
	I 45	16,732.9	-	-	
	I 25	35,656.4	-	-	
	I 26	31,269.3	-	-	
	I 27	8,323.9	-	-	
	I 46	24,150.3	-	-	
	I 28	18,080.8	-	-	
	I 29	17,440.3	-	-	
	I 30	17,205.6	-	-	○ 임대부지 ○ 최소획지: 1,650m ²
	I 31	16,586.5	-	-	○ 최소획지 : 1,650m ²
	I 37	11,335.9	-	-	
	I 38	18,140.4	-	-	
	I 39	6,641.2	-	-	
	I 32	29,649.1	-	-	
	I 33	11,435.2	-	-	
	I 47	21,902.1	-	-	
	I 34	31,078.1	-	-	
	I 35	42,749.2	-	-	
	I 36	15,806.7	-	-	
	I 40	3,876.3	-	-	
	I 41	10,957.0	-	-	
	I 42	21,769.6	-	-	
I 43	28,754.6	-	-		
I 44	7,806.3	-	-		
I 48	23,146.9	-	-	○ 지식산업센터용지	
I 49	25,546.5	-	-	○ 최소획지: 1,650m ²	
합 계		1,371,834.3	-	-	

▣ 단독주택용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단독주택 (H)	H 1	1,799.3	①	254.5	○ 합병불가 ○ 분할불가		
			②	241.5			
			③	243.9			
			④	244.1			
			⑤	244.4			
			⑥	243.0			
			⑦	327.9			
	H 2	2,518.2	①	259.8			
			②	247.5			
			③	248.6			
			④	247.7			
			⑤	255.8			
			⑥	261.6			
			⑦	247.3			
			⑧	247.3			
			⑨	247.4			
			⑩	255.2			
	H 3	1,376.1	①	281.8			
			②	273.9			
			③	273.8			
			④	273.7			
			⑤	272.9			
	합 계		5,693.6			5,693.6	

▣ 지원시설용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지원시설용지 (S)	S 2	18,408.6	①	2,028.7	
			②	2,608.1	
			③	674.0	
			④	677.0	
			⑤	627.9	
			⑥	595.8	
			⑦	642.1	
			⑧	660.8	
			⑨	660.0	
			⑩	650.9	
			⑪	596.0	
			⑫	613.5	
			⑬	672.3	
			⑭	2,050.1	
			⑮	984.6	
			⑯	978.2	
			⑰	945.0	
			⑱	1,743.6	
	S 2a	4,527.3	①	706.7	
			②	520.1	
			③	519.5	
			④	512.5	
			⑤	697.4	
			⑥	520.9	
			⑦	521.7	
			⑧	528.5	
	S 2b	4,662.5	①	526.9	
②			520.1		
③			519.4		
④			800.6		
⑤			514.0		
⑥			521.1		
⑦			521.8		
⑧			738.6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지원시설용지 (S)	S 3	7,919.6	①	3,959.2	
			②	3,960.4	
	S 3a	8,580.8	①	885.7	
			②	819.7	
			③	823.1	
			④	818.2	
			⑤	1,456.2	
			⑥	1,472.7	
			⑦	1,012.6	
			⑧	627.5	
			⑨	665.1	
	S 3b	5,606.0	①	565.1	
			②	560.1	
			③	560.1	
			④	560.0	
			⑤	564.9	
			⑥	557.8	
			⑦	560.0	
			⑧	560.2	
			⑨	559.9	
⑩			557.9		
S 5	2,868.6	①	1,434.8		
		②	1,433.8		
합 계		52,573.4		52,573.4	

▣ 재활용시설용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재활용시설(RE)	RE	9,620.7	①	9,620.7	
합 계		9,620.7	-	9,620.7	

▣ 주유소용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주유소(O)	O 1	2,441.5	①	2,441.5	
합 계		2,441.5	-	2,441.5	

▣ 주차장 (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주차장(P)	P 1	3,765.3	①	3,765.3	
	P 2	3,883.5	①	3,883.5	
	P 3	1,650.2	①	1,650.2	
	P 8	1,650.2	②	1,650.2	
	P 4	3,023.8	①	3,023.8	
	P 5	2,097.4	①	2,097.4	
	P 6	2,694.2	①	2,694.2	
	P 7	4,822.9	①	4,822.9	
합 계		23,587.5	-	23,587.5	

▣ 공영차고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공영차고지(PP)	PP	9,998.7	①	9,998.7	
합 계		9,998.7	-	9,998.7	

▣ 우수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우수지 (WR)	WR 1	13,269.4	①	13,269.4	
	WR 2	7,280.1	①	7,280.1	
	WR 3	20,613.0	①	20,613.0	
	WR 4	114.7	①	114.7	
합 계		41,277.2	-	41,277.2	

주) ①호우수지(WR3)은 ②호공원내 시설과 연계설치(A: 20,613㎡)

▣ 변전소 (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변전소(TS)	TS	3,993.1	①	3,993.1	
합 계		3,993.1	-	3,993.1	

▣ 방수설비(빗물펌프장) (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방수설비(RP)	RP	4,139.6	①	4,139.6	
합 계		4,139.6	-	4,139.6	

▣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폐기물처리시설(W)	W	38,680.9	①	38,680.9	
합 계		38,680.9	-	38,680.9	

☑ 폐수종말처리장 (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폐수종말처리시설 (WDP)	WDP	40,088.4	①	40,088.4	
합 계]		40,088.4	-	40,088.4	

☑ 공공문화·복지시설 (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공공문화·복지시설 (CW)	CW1	2,018.5	①	2,018.5	
합 계		2,018.5	-	2,018.5	

2) 건축물에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 공장용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공장 용지 (I)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align-items: center;"> <div style="display: flex; gap: 5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I5</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I9</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gap: 5px; margin-top: 5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III1</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I32</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top: 5px;">I33</div> </div>	용 도	허용용도	○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이하		
		용 적 률	○ 350%이하		
		높이(층)	-		
		배 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형 태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 옥상부분은 냉각탑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주 차	○ 시설면적 190㎡당 1대, 기계식주차장 불허 ○ 대형주차면(3.25m × 14.0m)을 전체 주차면의 5% 이상 확보하며, 최소 1개면 이상 확보할 것		
		색 채	주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주조색(권장)	
			보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보조색(권장)	
	강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강조색(권장)			
건축선	-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장 용지 (I)	I2, I7, I25, I26, I28, I31, I34, I36, I45, I46, I47	용 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표준산업분류- 383)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이하		
		용 적 륜	○ 350%이하		
		높이(층)	-		
		배 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 옥상부분은 냉각탑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주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면적 190㎡당 1대, 기계식주차장 불허 ○ 대형주차면(3.25m × 14.0m)을 전체 주차면의 5% 이상 확보하며, 최소 1개면 이상 확보할 것 		
		색 채	주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주조색(권장)	
			보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보조색(권장)	
			강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강조색(권장)	
		건축선	-		
		공장 용지 (II)	II, I3, I4, II5, I6, I8, II0, II2, II3, II4, II6, II7, II8, II9, II20, II22, II23, II24, II27, II29, I30, I35, I37, I38, I39, I40, I41, I42, I43, I44, I49	용 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이하				
용 적 륜	○ 350%이하				
높이(층)	-				
배 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 옥상부분은 냉각탑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주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면적 190㎡당 1대, 기계식주차장 불허 ○ 대형주차면(3.25m × 14.0m)을 전체 주차면의 5% 이상 확보하며, 최소 1개면 이상 확보할 것 				
색 채	주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주조색(권장)	
	보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보조색(권장)	
	강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강조색(권장)	
건축선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장 용지 (1)	I 48	용 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산업센터 1.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의 시설을 말함 2.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가능업종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표준산업분류;25)에 한한다. 3. 기타사항은 관련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등)을 따른다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지식산업센터 내 불허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동물병원, 단란주점, 의약품도매점, 안마시술소·안마원 용도는 불허) 	
		건 폐 율	○ 70%이하		
		용 적 륜	○ 350%이하		
		높이(층)	-		
		배 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형 태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주 차	○ 공장용: 시설면적 190㎡당 1대, 기타용: 관련조례 준수		
			○ 기계식 주차장 불허 ○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5.1m) 20%이상 확보		
		색 채	주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주조색(권장)	
			보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보조색(권장)	
			강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강조색(권장)	
		건 축 선	-		
공장 용지 (1)	I 21	용 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산업센터 1.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의 시설을 말함 2.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가능업종은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받은 업종에 한함 3. 기타사항은 관련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등)을 따른다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지식산업센터 내 불허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동물병원, 단란주점, 의약품도매점, 안마시술소·안마원 용도는 불허) 	
		건 폐 율	○ 70%이하		
		용 적 륜	○ 350%이하		
		높이(층)	-		
		배 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형 태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주 차	○ 공장용: 시설면적 190㎡당 1대, 기타용: 관련조례 준수		
			○ 기계식 주차장 불허 ○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5.1m) 20%이상 확보		
		색 채	주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주조색(권장)	
			보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보조색(권장)	
			강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강조색(권장)	
		건 축 선	-		

☑ 단독주택용지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 주택 용지 (H)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margin-bottom: 5px;">H1</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H3</div>	용 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포함) ○ 1층에 한하여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단,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4호 가목 및 나목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륜	○ 200% 이하		
		높이(층)	○ 3층 이하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부: 건축설비 노출 금지 ○ 담장: 1.5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주 차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기계식주차장 불허		
		색 채	주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단독주택용지의 주조색(권장)	
			보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단독주택용지의 보조색(권장)	
			강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단독주택용지의 강조색(권장)	
건 축 선	○ 소로1-1, 소로1-2, 소로3-1호선변 건축한계선 1m				

▣ 지원시설용지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원 시설 용지 (S)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S2</div> - ①~⑱	용 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의료시설(장례식장 제외) ○ 종교시설(납골당 제외)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에 한함) ○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층)	○ 7층 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 공동건축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층부(1층)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시형 벽면: 도로에 접한 벽면에 한하여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투시형 셔터: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하는 부분포함)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 ○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옥상정원 등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으로 권장 ○ 도로변 외벽으로 도시가스등 설비배관의 노출은 금하고 기존 건축물 또는 건축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 		
		주 차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기계식주차장 불허		
		색 채	주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주조색(권장)	
			보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보조색(권장)	
			강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강조색(권장)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로3-23, 대로 3-118, 중로1-140, 중로2-663, 중로2-665호선변 건축한계선 3m ○ 중로3-249호선변 건축한계선 2m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내 용		
지 원 시 설 용 지 (S)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margin-bottom: 5px;">S2a</div> - ①~⑧,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margin-bottom: 5px;">S2b</div> - ①~⑧	용 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미술소 제외) ○ 의료시설(장례식장 제외) ○ 종교시설(납골당 제외)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에 한함) ○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층)	○ 7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 공동건축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형 태	○ 저층부(1층)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 사용 - 투시형 벽면: 도로에 접한 벽면에 한하여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 투시형 셔터: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하는 부분포함)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 ○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옥상정원 등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으로 권장 ○ 도로변 외벽으로 도시가스등 설비배관의 노출은 금하고 기존 건축물 또는 건축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		
		주 차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기계식주차장 불허		
		색 채	주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주조색(권장)	
			보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보조색(권장)	
	강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강조색(권장)			
건축선	○ 중로2-665, 중로3-249호선변 건축한계선 3m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 원 시 설 용 지 (S)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S3</div> - ①, ②	용 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에 한함) ○ 판매시설 ○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에 한함)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층)	○ 7층 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 공동건축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층부(1층)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시형 벽면: 도로에 접한 벽면에 한하여 벽면적의 50% 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 투시형 셔터: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하는 부분포함)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 ○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옥상정원등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으로 권장 ○ 도로변 외벽으로 도시가스등 설비배관의 노출은 금하고 기존 건축물 또는 건축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 		
		주 차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기계식주차장 불허		
		색 채	주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주조색(권장)	
			보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보조색(권장)	
강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강조색(권장)				
건축선	○ 광로3-23, 중로2-666호선변 건축한계선 3m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원 시설 용지 (S)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S3a</div> - ①~⑨	용 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에 한함) ○ 판매시설 ○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에 한함)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층)	○ 7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 공동건축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형 태	○ 저층부(1층)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 사용 - 투시형 벽면: 도로에 접한 벽면에 한하여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 투시형 셔터: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하는 부분포함)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 ○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옥상정원등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으로 권장 ○ 도로변 외벽으로 도시가스등 설비배관의 노출은 금하고 기존 건축물 또는 건축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		
		주 차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기계식주차장 불허		
		색 채	주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주조색(권장)	
			보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보조색(권장)	
	강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강조색(권장)			
건축선	○ 광로3-23, 중로1-364, 중로2-666호선변 건축한계선 3m ○ 중로3-337호선변 건축한계선 2m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원 시설 용지 (S)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S3b</div> - ①~⑩	용 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에 한함) ○ 판매시설 ○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에 한함)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층)	○ 7층 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 공동건축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층부(1층)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시형 벽면: 도로에 접한 벽면에 한하여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 투시형 셔터: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하는 부분포함)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 ○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옥상정원 등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으로 권장 ○ 도로변 외벽으로 도시가스등 설비배관의 노출은 금하고 기존 건축물 또는 건축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 		
		주 차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기계식주차장 불허		
		색 채	주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주조색(권장)	
			보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보조색(권장)	
			강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강조색(권장)	
건축선	○ 중로2-666호선, 중로3-나호선변 건축한계선 3m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내 용		
지 원 시 설 용 지 (S)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S5</div> ①, ②	용 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에 한함)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에 한함) ○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 이하		
		용 적 륜	○ 400% 이하		
		높 이(층)	○ 7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 공동건축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형 태	○ 저층부(1층)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 사용 -투시형 벽면: 도로에 접한 벽면에 한하여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투시형 셔터: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하는 부분포함)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 ○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옥상정원 등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으로 권장 ○ 도로변 외벽으로 도시가스등 설비배관의 노출은 금하고 기존 건축물 또는 건축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		
		주 차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기계식주차장 불허		
		색 채	주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주조색(권장)	
			보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보조색(권장)	
강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강조색(권장)				
건축선	○ 대로3-117, 중로2-671, 중로2-672호선변 건축한계선 5m				

재활용시설용지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재활용 시설 용지 (RE)	RE ①	용 도	허용용도	○재활용산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층)	-	
		주 차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기계식주차장 불허	

주유소용지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유소 용 지 (S)	O1 - ①	용 도	허용용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부대시설 포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부대시설 포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층)	○ 5층 이하		
		배 치	○ 각 시설별 관계법규에 따른 배치기준을 준수		
		색 채	○정유업체 고유 색채 적용 가능 ○정유업체 고유 색채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의 색채기준 준수		
			주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주조색(권장)	
			보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보조색(권장)	
		강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강조색(권장)		
건축선	○ 광로3-23, 중로1-364호선변 5m				

▣ 주차장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장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P1</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P8</div> ①	용 도	허용용도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포함) ○근린생활시설 도입시 비율은 연면적의 30%이내 [근린생활 시설 허용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집회장 제외), 판매시설(상점 및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함), 운동시설(운동장,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900% 이하	
		높이(층)	-	
		형태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시 지상부에 일부 주차장 설치 ○주차구획은 교통영향평가 협의결과를 반영할 것 단, 불가피한 경우는 관리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변경가능	

▣ 공영차고지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 영 차고지 (P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PP</div> ①	용 도	허용용도	○「도시 균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및 같은 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층)	-	

▣ 공공문화·복지시설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공 문화 · 복지 시설 (CW)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CW 1</div> - ①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수행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 제13호 운동시설 중 탁구장, 체육도장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기타	-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층)	○ 5층 이하		
		배 치	○ 각 시설별 관계법규에 따른 배치기준을 준수		
		형 태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건축물의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옥상녹화 및 옥상휴게공간 설치 권장 ○ 장애인을 위한 계획 - 사회복지시설용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해당 주차장 관련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색 채	주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주조색(권장)	
			보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보조색(권장)	
강조색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강조색(권장)				
건축선	• 광로3-23호선, 대로3-118호선변 3m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없음)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교통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지방교통영향심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검단 일반산업단지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따름 ○ 주차장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5.1m) 20%이상 확보할 것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에 관한 기준 제시(권장) - “첨부2.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참조 	
경관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건축물에 의한 대형입면은 시각적 분절 등의 방법으로 위압감을 감소시키고 미관을 향상시킬 것 ○ 차가운 이미지의 공장시설은 가급적 녹지를 통하여 차폐 	권장 사항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을 준용함 (관련법이 변경 시 강화된 규정을 따른다)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의 인가

나.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의제)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11-4, 1644-5, 1636-2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완충저류시설
 - 명 칭 : 인천광역시 뷰티폴파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 A유역 완충저류시설 1,321.7㎡, B,C유역 중계펌프장 217.2㎡, 241.8㎡
 - 규 모 : 완충저류시설, 중계펌프장, 자연유하 및 압송관로, 차집관로 등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변경) 고시일 ~ 2028. 2. 29.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구분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m ²)	편입면적(m ²)	소유자	
						소유자명	소유자 주소
합 계				35,031.9	35,031.9		
1	유수지	서구 오류동	1611-4	공원	14,482.4	-	인천광역시 서구
2	유수지		1644-5	유지	13,269.4	-	
3	유수지		1636-2	유지	7,280.1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다. 개발행위의 허가 (의제)

- 신청인 : 인천광역시장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11-4, 1644-5, 1636-2번지 일원
- 사업기간 : 허가일 ~ 2028. 2. 29.까지
- 개발행위목적 : 산업단지 내에 사고유출수 발생시 사고유출수 저류하는 완충저류시설 설치
- 개발행위구분 : 완충저류시설 1개소, 중계펌프장 2개소
 - 무게 : 약 33,282.8ton
 - 부피 : 약 13,867.8m³
 - 수평투영면적 : 약 1,505.5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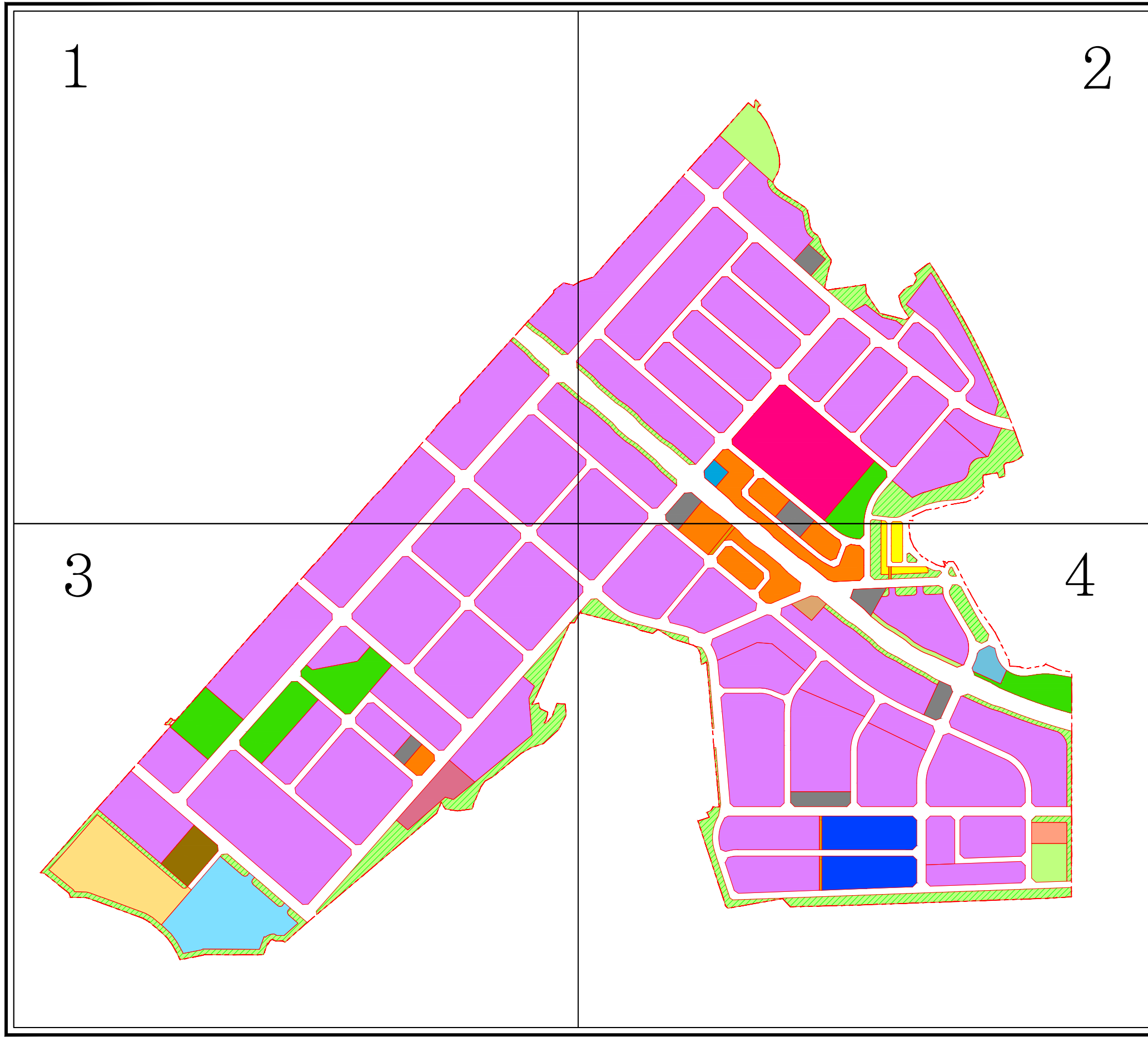
8. 관계도서의 열람

(관계도서는 다음 열람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 관련 도서: 『별첨』 (계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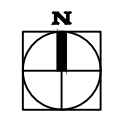
○ 열람 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계획과 (전화 032-560-47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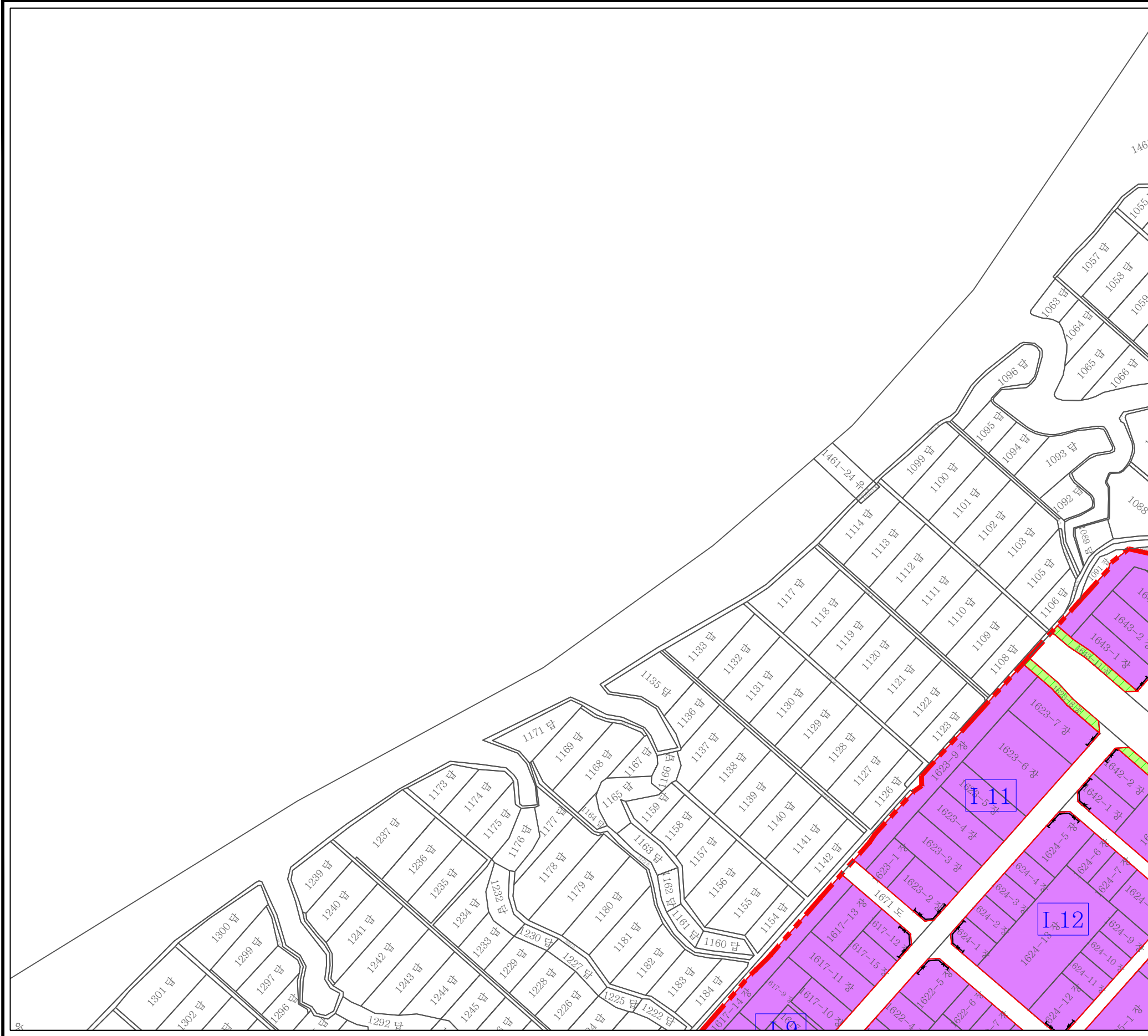
뷰티풀파크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일반공장용지 (I)
- 임대공장용지 (I)
- 지식산업센터용지 (I)
- 재활용시설용지 (RE)
- 지원 시설 (S)
- 주유소용지 (O)
- 주거용지 (H)
- 저류시설 (WR)
- 공공문화·복지시설 (CW)
- 폐기물처리시설 (W)
- 폐수종말처리장 (WDP)
- 빗물펌프장(WR)
- 변전소 (TS)
- 주차장 (P)
- 공영차고지 (PP)

구분	작성자	입안권자		결정권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속	6901산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직위	과장	-	지구단위계획팀 장	-	지구단위계획팀 장
직명	-	지방시설서기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서기	지방시설주사
서명	박경만	손임중	전경택	손임중	전경택
확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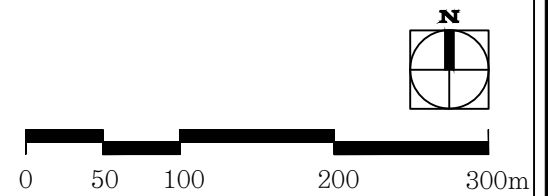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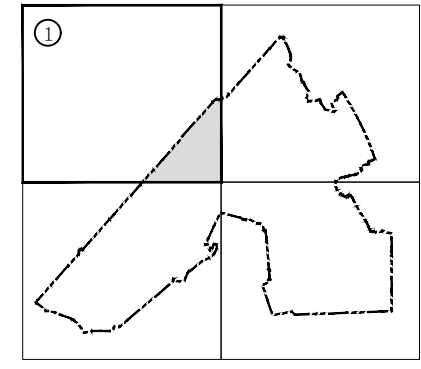
뷰티풀파크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일반공장용지 (I)
 - 임대공장용지 (I)
 - 지식산업센터용지 (I)
 - 재활용시설용지 (RE)
 - 지원 시설 (S)
 - 주유소용지 (O)
 - 주거용지 (H)
 - 저류시설 (WR)
 - 공공문화·복지시설 (CW)
 - 폐기물처리시설 (W)
 - 폐수종말처리장 (WDP)
 - 빗물펌프장(WR)
 - 변전소 (TS)
 - 주차장 (P)
 - 공영차고지 (PP)
 - 가구번호
 - 획지위치
 - 획지경계선
 - 차량진출입불허구간
- ※ 저류시설(WR3)은 공원 내 포함시설.

구분	작성자	입안권자		결정권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속	㈜이산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직위	대표이사	-	도시계획팀 장	-	도시계획팀 장
직명	-	지방시설서기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서기	지방시설주사
서명	이원찬	손임동	권경택	손임동	권경택
확인인					

KEY -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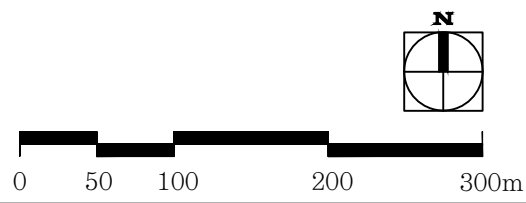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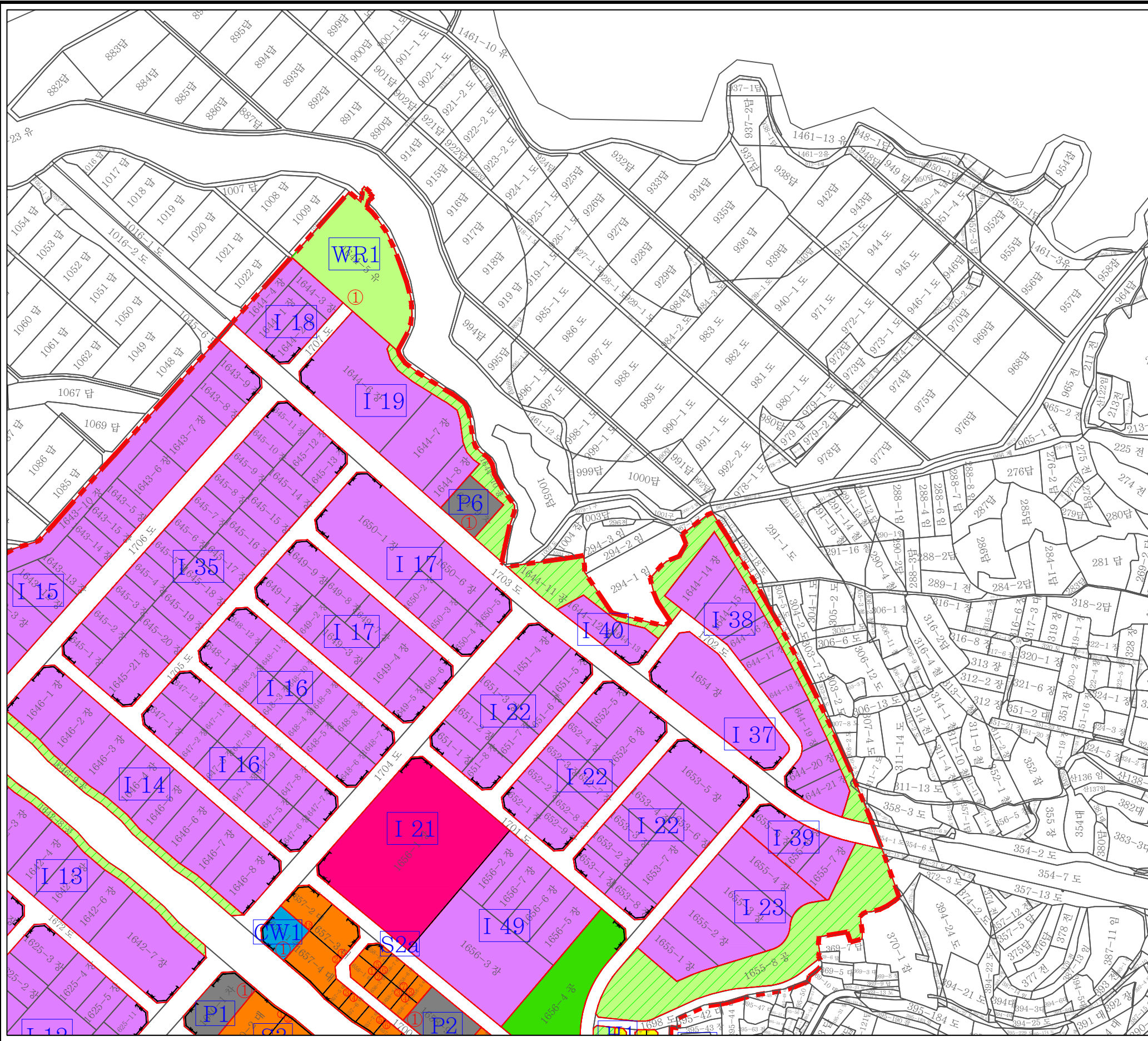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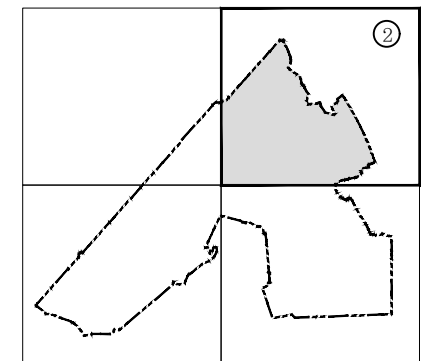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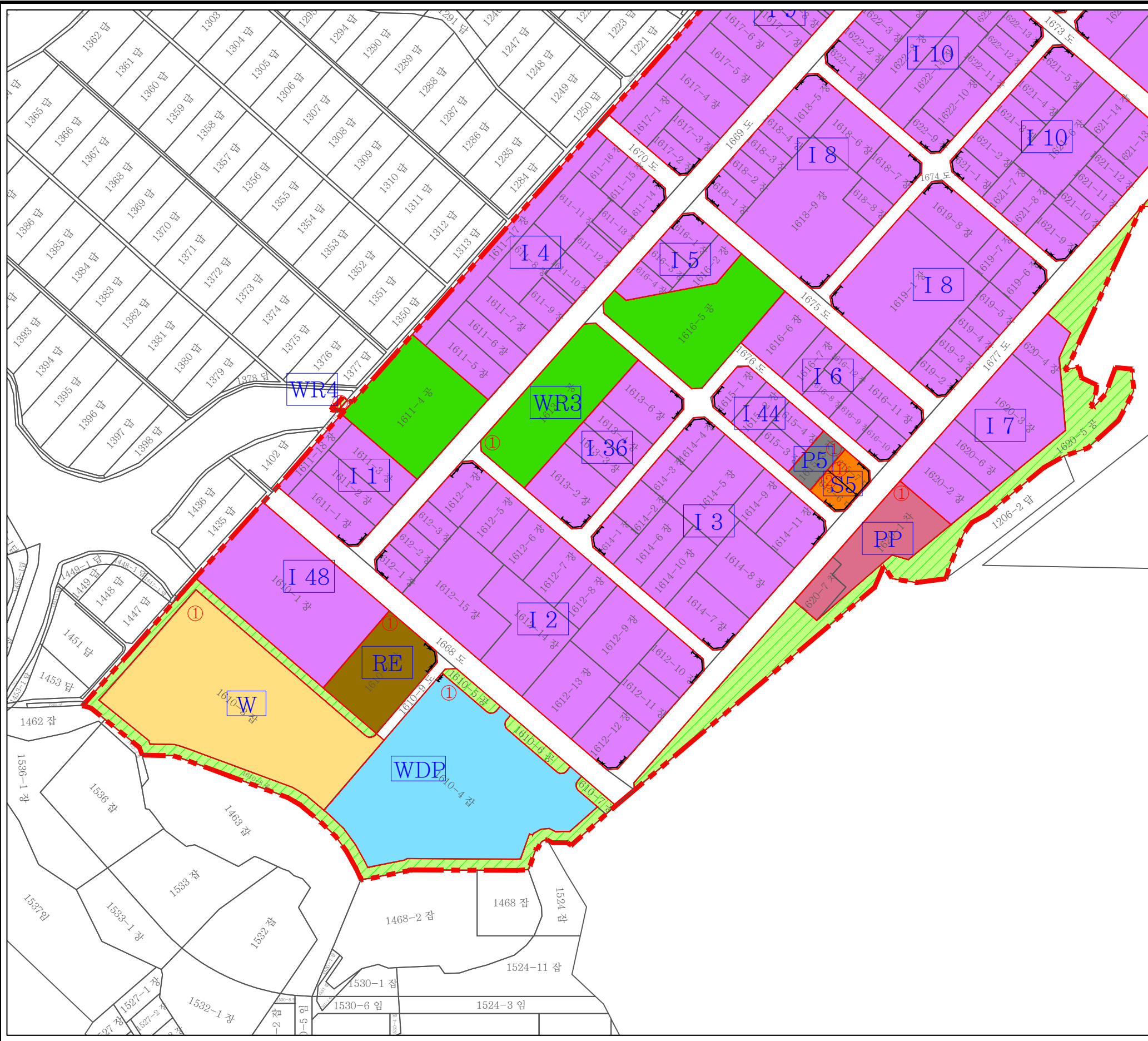
뷰티플파크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일반공장용지 (I)
- 임대공장용지 (I)
- 지식산업센터용지 (I)
- 재활용시설용지 (RE)
- 지원 시설 (S)
- 주유소용지 (O)
- 주거용지 (H)
- 저류시설 (WR)
- 공공문화·복지시설 (CW)
- 폐기물처리시설 (W)
- 폐수종말처리장 (WDP)
- 빗물펌프장(WR)
- 변전소 (TS)
- 주차장 (P)
- 공영차고지 (PP)
- 가구번호
- 획지위치
- 획지경계선
- 차량진출입불허구간
- ※ 저류시설(WR3)은 공원 내 포함시설.

구분	작성자	입안권자		결정권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속	㈜이산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직위	대표이사	-	도시계획 팀장	-	도시계획 팀장
직명	-	지방시설서기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서기	지방시설주사
서명	이원찬	손임동	권경택	손임동	권경택
확인인					

KEY -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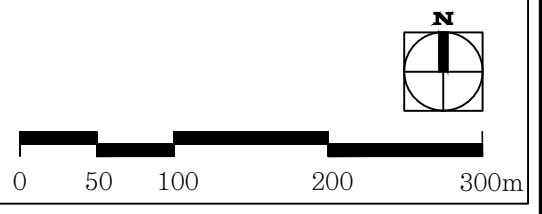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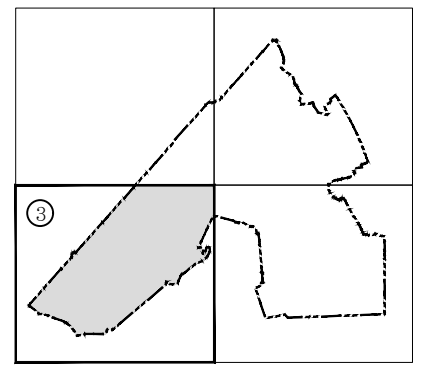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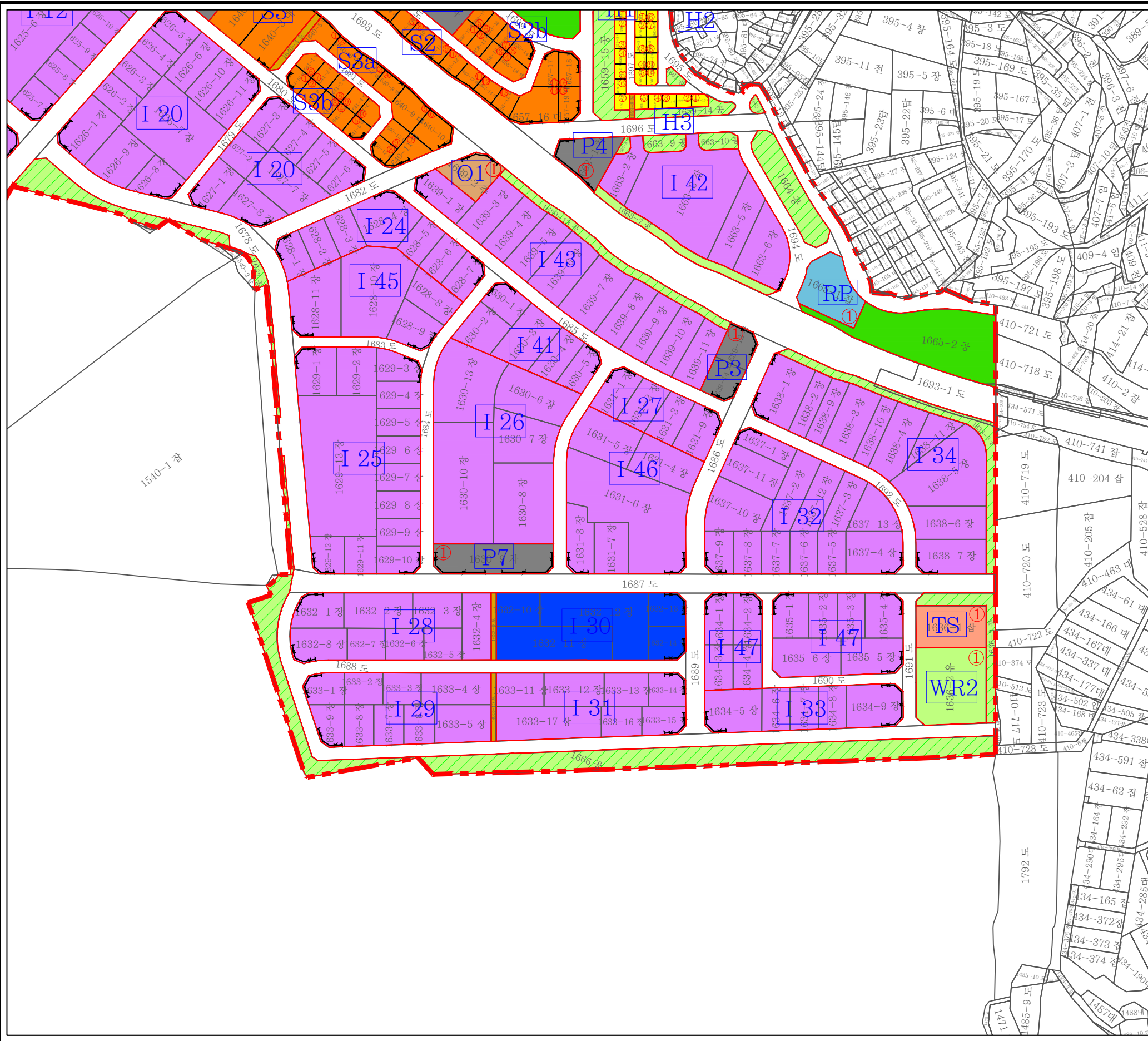
뷰티풀파크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일반공장용지 (I)
- 임대공장용지 (I)
- 지식산업센터용지 (I)
- 재활용시설용지 (RE)
- 지원 시설 (S)
- 주유소용지 (O)
- 주거용지 (H)
- 저류시설 (WR)
- 공공문화·복지시설 (CW)
- 폐기물처리시설 (W)
- 폐수종말처리장 (WDP)
- 빗물펌프장(WR)
- 변전소 (TS)
- 주차장 (P)
- 공영차고지 (PP)
- 가구번호
- 획지위치
- 획지경계선
- 차량진출입불허구간
- ※ 저류시설(WR3)은 공원 내 포함시설.

구분	작성자	입안권자		결정권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속	㈜이산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직위	대표이사	-	도시계획 팀장	-	도시계획 팀장
직명	-	지방시설서기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서기	지방시설주사
서명	이원찬	손임동	권경택	손임동	권경택
확인인					

KEY -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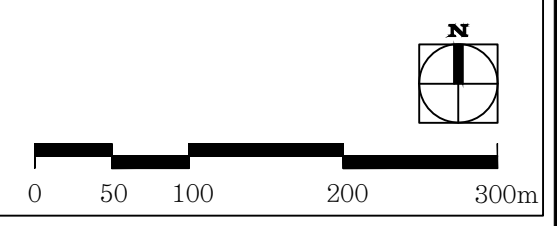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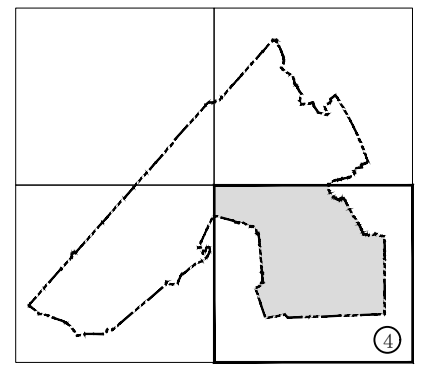


뷰티플파크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일반공장용지 (I)
- 임대공장용지 (I)
- 지식산업센터용지 (I)
- 재활용시설용지 (RE)
- 지원 시설 (S)
- 주유소용지 (O)
- 주거용지 (H)
- 저류시설 (WR)
- 공공문화·복지시설 (CW)
- 폐기물처리시설 (W)
- 폐수종말처리장 (WDP)
- 빗물펌프장(WR)
- 변전소 (TS)
- 주차장 (P)
- 공영차고지 (PP)
- 가구번호
- 획지위치
- 획지경계선
- 차량진출입불허구간
- ※ 저류시설(WR3)은 공원 내 포함시설.

구분	작성자	입안권자		결정권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속	㈜이산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직위	대표이사	-	도시계획 팀 장	-	도시계획 팀 장
직명	-	지방시설서기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서기	지방시설주사
서명	이원찬	손일동	권경택	손일동	권경택
확인인					

KEY -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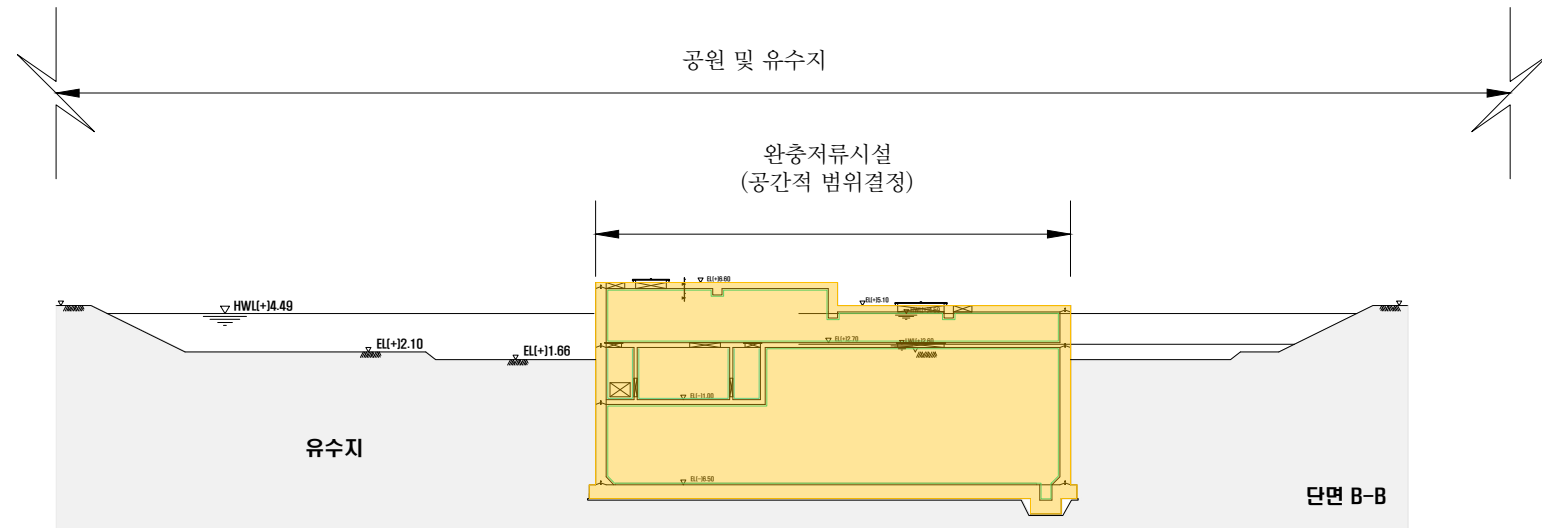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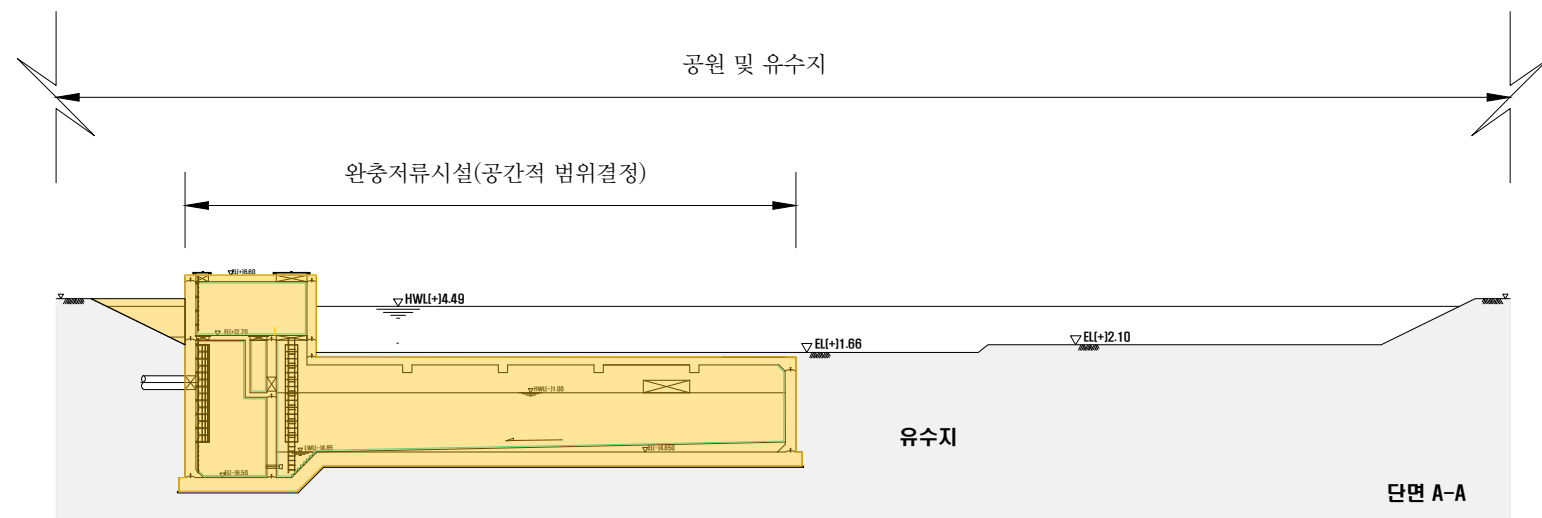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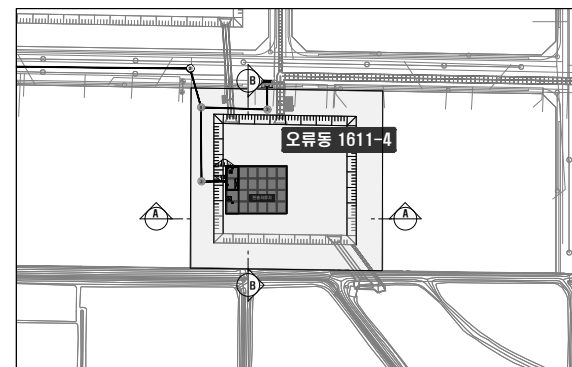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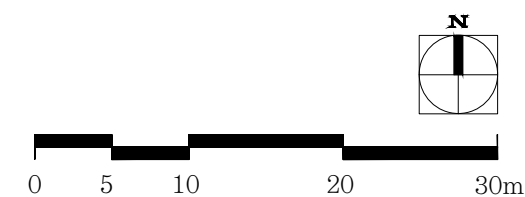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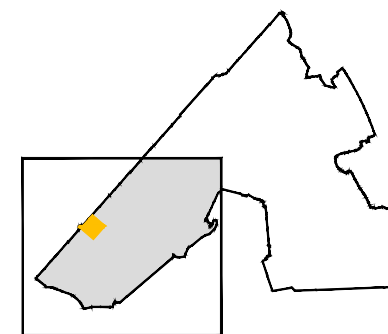
뷰티풀파크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적 범위결정 단면도(1)

공간적 범위결정

구분	작성자	입안권자		결정권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속	(주)이산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직위	대표이사	-	도시계획 팀 장	-	도시계획 팀 장
직명	-	지방시설서기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서기	지방시설주사
서명	이원관 손임동	손임동	권경택	손임동	권경택
확인인					

KEY -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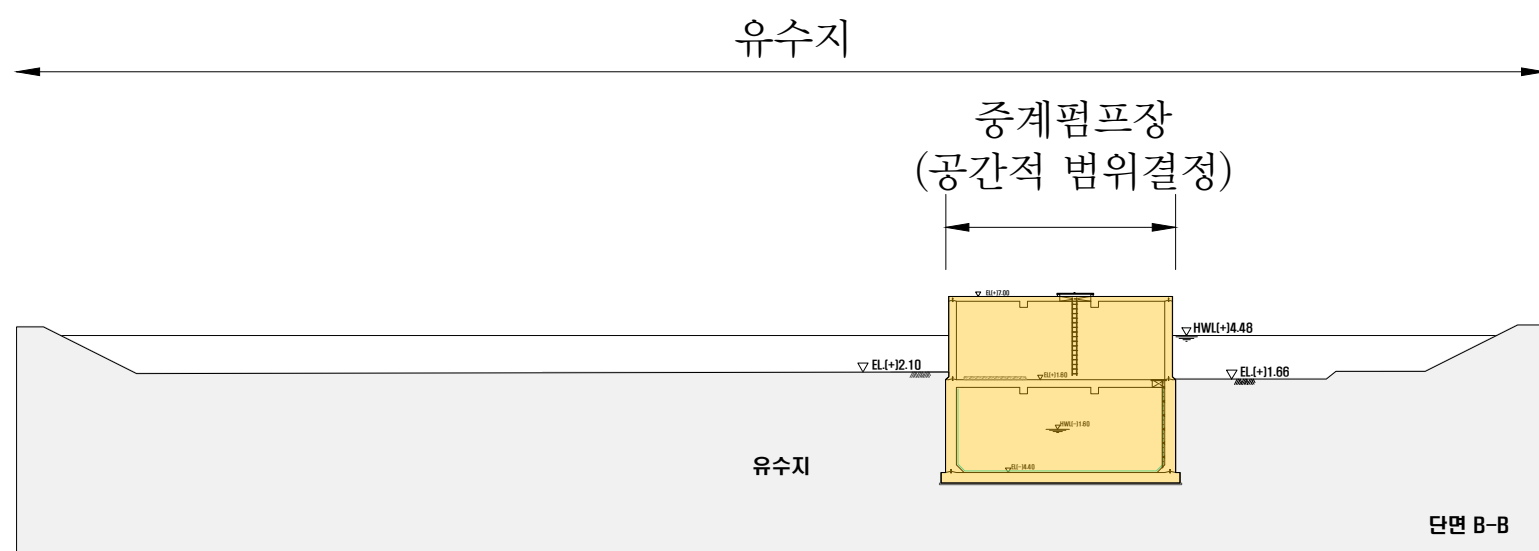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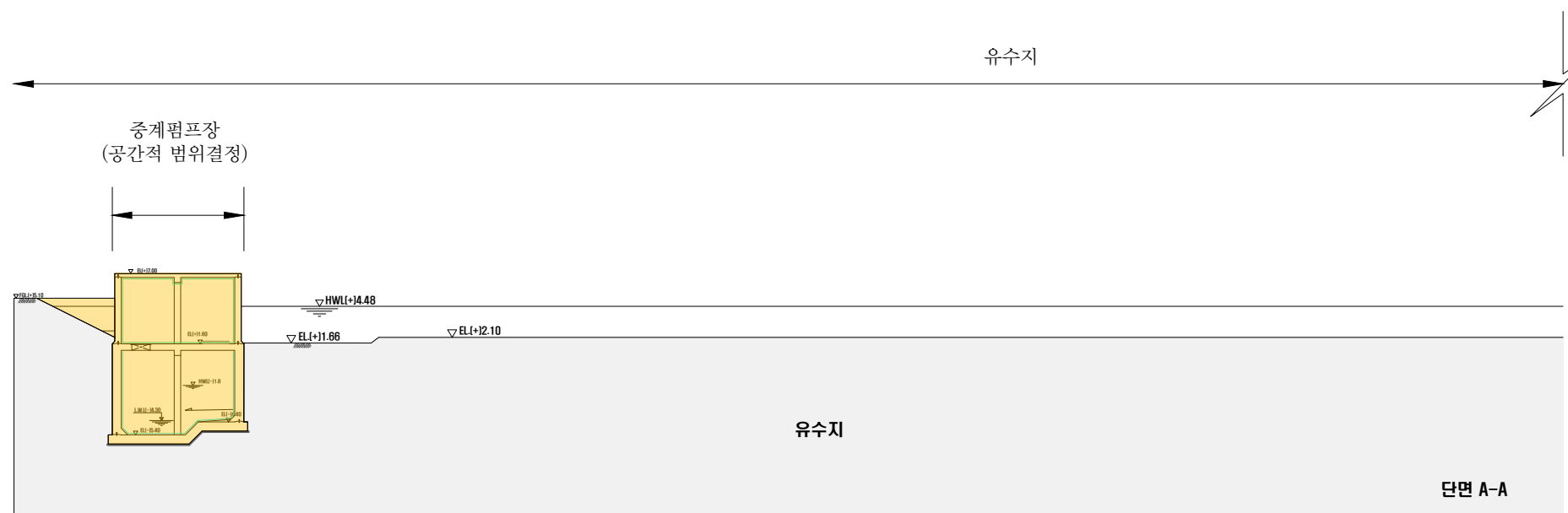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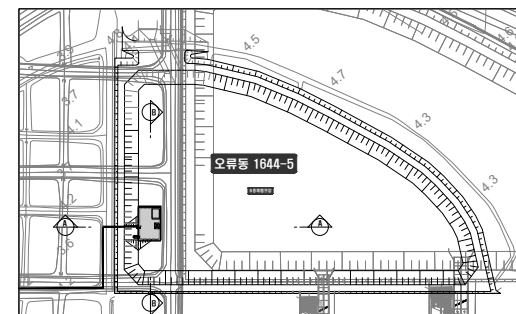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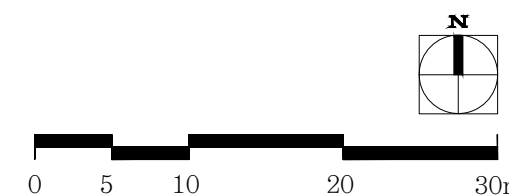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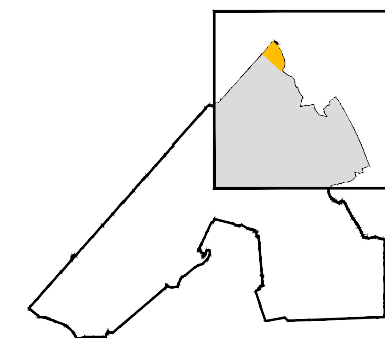
뷰티풀파크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적 범위결정 단면도(2)

공간적 범위결정

구분	작성자	입안권자		결정권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속	(주)이산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직위	대표이사	-	도시계획 팀 장	-	도시계획 팀 장
직명	-	지방시설서기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서기	지방시설주사
서명	이원관	손임동	권경택	손임동	권경택
확인인					

KEY - MAP



뷰티풀파크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적 범위결정 단면도(3)

공간적 범위결정

구분	작성자	입안권자		결정권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속	(주)이산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직위	대표이사	-	도시계획 팀 장	-	도시계획 팀 장
직명	-	지방시설서기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서기	지방시설주사
서명	이원관 손임동	손임동	권경탁	손임동	권경탁
확인인					

KEY - MAP

